

영등포구의회  
제15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0. 4. 15.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李 憲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 263호 로 2010년 3월 1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3월 2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 제안이유

2010년 1월 1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의 세목체계가 개편되었음.

## 3. 개정내용

- 가. 구세 세목에서 사업소세를 삭제하되, 종전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추가함. (안 제3조)
- 나. 주민세 재산분의 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세율, 신고의무를 종전의 사업소세 재산할과 동일하게 규정함. (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 다.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세율, 신고의무를 종전의 사업소세 종업원할과 동일하게 규정함. (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76조의3부터 제176조의7까지,  
제179조의6부터 제179조의10까지.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2010년 1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이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현행 “주민세”와 “사업소세 종업원할”은 “지방소득세”로 신설하고, “사업소세 재산할”은 “주민세 재산분”으로 지방세 세목 체계를 개편하였음.

나. 개정되는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세율, 신고의무는 종전 “사업소세 재산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 동일하게 규정하였음.

●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세목체계를 일부 개편하는 것이며, 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사항도 종전과 같아 우리구 세입증감 효과는 없으며 별도의견은 없음.

# 관 계 법 령

## ■ 지방세법<신설 2010.01.01>

### 제3관 종업원분

제179조의6(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해당 월급여의 총액으로 한다.

제179조의7(세율) ①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시장·군수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제179조의8(면세점) ①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른 면세점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9조의9(징수방법과 납기) ①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79조의6 및 제179조의7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제2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부족한 경우 :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2항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79조의10(신고의무)** ①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 제3관 재산분

**제176조의3(과세표준)**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

**제176조의4(세율)** ①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시장·군수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분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

③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176조의5(면세점)** ①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른 면세점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6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③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④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76조의3 및 제176조의4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제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부족한 경우 :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3항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76조의7(신고의무)** ①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 지방세 세목조정에 따른 신고·납부(요약)

## 1. 지방소득세 신설

기 존		신 설		
주민세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종합소득세할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할			양도소득세분
	법인세할			법인세분
사업소세	종업원할	주민세	종업원분	
	재산할		재산분	

※ 시행일시 : 2010년 1월 1일(2010년 최초 신고분부터 시행)

-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단순히 지방소득세로 명칭만 변경
- 세율, 납기를 비롯한 과세체계는 기존제도 그대로 유지
  - ▶ 주민세(소득할) → 지방소득세(소득분)
  - ▶ 사업소세(종업원할) → 지방소득세(종업원분)
  - ▶ 사업소세(재산할) → 주민세(재산분)
  - ▶ 주민세(균등할) → 주민세(균등분)

## 2. 주요 용어 및 개념정의

### 가. 지방소득세 소득분(구 소득할주민세)

- 구 성 : 법인세분, 특별징수분,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 납세의무자 : 법인세·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있는 자
- 세 율 : 법인세·소득세액의 10%
- 납 기 :
  - ▶ 법인세분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내 신고납부
  - ▶ 소득세분 :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신고납부
  - ▶ 특별징수분 :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나. 지방소득세 종업원분(구 종업원할사업소세)

- 납세의무자 : 종업원 50인 초과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 세 율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 납 기 :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다. 주민세 재산분(구 재산할사업소세)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7월1일)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에서 사업